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1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이양수 · 박준태 · 서범수
김소희 · 강대식 · 김미애
이달희 · 박정하 · 이현승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 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 지원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처(傷痕處)(본인의 고의로 악화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 ----- ----- ----- ----- ----- ----- ----- ----- 다음 각 <u>호의 의료기관</u> ----- ----- ----- ----- -. ----- ----- ----- -----.

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2. (생략) ⑤ (생략)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u>보훈병원</u>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보훈병원</u>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 -----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 ----- ----- <u>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u> <u>관</u>----- ----- <u>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u>---. - ----- -----.
--	--